

# 소득계층별 공적이전소득의 불평등 변화분석

이용재<sup>1</sup>, 김용미<sup>2\*</sup>

<sup>1</sup>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sup>2</sup>충청대학교 사회복지과 강사

## Analysis of Inequality of Public Transfer Income by Income Level

Yong-jae Lee<sup>1</sup>, Yong-mi Kim<sup>2\*</sup>

<sup>1</sup>Dept. of Social Welfare, Hoseo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sup>2</sup>Dept. of Social Welfare, Chung Cheong University, adjunct professor

요 약 본 연구는 공적이전소득의 소득계층별 차이와 불평등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된 연구로 1996년부터 2016년까지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계층별 공적이전소득 평균금액의 변화를 관찰하고 집중지수를 산출하였다. 주요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이전소득의 소득계층별 집중지수 산출결과, 1996년 공적이전소득 집중지수는 +0.2774로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2009년 이후 집중지수가 음(-)의 값이 되면서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현상이 2016년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집중지수 절대 값이 적어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전체 평균 공적이전소득 대비 해당 소득분위의 평균 공적이전소득의 비율변화를 확인한 결과, 저소득층의 평균 공적이전소득 증가가 매우 큰 반면에 고소득층은 적어서 전체 평균으로 수렴되어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공적이전소득액이 적어서 소득불평등의 개선에 공적이전제도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던 것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공적이전소득의 소득계층별 평균액 변화를 확인한 결과 모든 소득계층에서 공적이전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그 증가속도가 저소득층이 빠르고 고소득층이 느려서 최근에는 저소득층의 공적이전소득이 고소득층에 비해서 많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소득계층별 공적이전소득의 불평등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소득계층간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주제어 : 공적이전소득, 소득계층, 불평등, 소득재분배, 집중지수, 소득보장제도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by using the concentration index calculation method from 1996 to 2016 by using the household trend survey data to confirm the difference of income transfer income and inequality in public transfer income.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ublic transfer income concentration index in 1996 was concentrated on the high income group with +0.2774, but since 2009, the concentration index has been negative (-), which has concentrated on the low income group. However, the effect of redistribution of income was small. Second, the average public transfer income of low - income households increased significantly while the number of high income earners decreased. It is gradually improving that public transfer income did not play a role in the improvement of income inequality. Third, public transfer income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ing in all income classes, and the rate of increase is low in the low income class and slow in the high income class, so the public transfer income of the low income class is higher than that of the high income class. In sum, the inequality of public transfer income by income class in Korea is gradually improving, but it is not considered to be a level that can improve the inequality between income groups.

**Key Words** : Public Transfer Income, Income Class, Inequality, Income Redistribution, Concentration Index, Income Guarantee System

\*Corresponding Author : Yong-mi Kim(dasu4501@hanmail.net)

Received October 29, 2018

Accepted December 20, 2018

Revised December 4, 2018

Published December 28, 2018

## 1. 서론

우리나라의 공적소득보장제도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제도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제도, 빈곤층을 위한 공공부조제도의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생계급여가 있다. 그 외에도 공공부조제도로 분류되고 있는 기초연금, 장애연금, 긴급지원제도 생계급여 등이 있다. 이러한 공적소득보장제도는 노인인구 증가와 노인빈곤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2011년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평균 13.5%보다 3배 이상 높은 45.1%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평균소득과 비교한 노인 소득수준은 66.7%로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었다. 한국 노인이 처한 빈곤은 공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당사자 본인의 조기은퇴와 자녀교육비·양육비·결혼비 등으로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1]. 이처럼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소득보장을 통한 빈곤방지를 위한 공공부조는 물론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각종 공적이전제도가 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공적소득이전제도의 역할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학자인 Rejda(1999)[2]는 사망·노령·질병·장애·실업 등 여러 사회적 위험(Social Risk)을 당하는 국민에게 최저한의 경제적 보장제공, 빈곤예방, 시민의 소비·저축·투자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경제 안정화에 기여, 근로 인센티브·술선수범·근검절약 등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가치 진작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공적소득이전제도의 핵심적 역할은 빈곤예방과 소득재분배를 통한 사회적 평등의 지향인 것이다[3]. 최근 우리사회가 극심한 소득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양극화 문제에 봉착하면서 공적소득보장제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공적이전소득제도의 종합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는 없었다.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 다양한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되고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를 시계열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다만, 이용재(2016)가 노인실태조사를 통하여 노인소득보장제도가 소득불평등에 미친 효과 분석을 통하여 공적노인소득보장제도의 소득불평등 완화에 매우 미미한 효과를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4]. 역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이용재·엄소영(2015)의 연구에서도 공적인 노후소득은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많아서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빈곤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5].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소득불평등이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공적소득보장제도 전반을 평가하지 못하고 시계열적 시도를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망라한 공적소득보장제도에 의한 공적이전소득이 소득계층별 소득보장과 소득재분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1996년부터 2016년까지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한 소득계층별 공적이전소득액의 변화와 집중지수 분석을 통하여 시계열적으로 확인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1996년 경제위기 이후 다소 개선되었던 경제수준이 2007년 세계금융시장의 불안과 주택가격 버블 등으로 재차 어려움을 겪는 등 다양한 세계경제구조 속에서 공적소득이전제도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여왔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1) 공적소득보장제도와 소득불평등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사회서비스로 구분되는데 소득보장과 관련된 제도는 사회보험 중에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제도, 산재근로자를 위한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의 현금급여, 실업자를 위한 구직급여 등 고용보험의 현금급여제도가 있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제도, 장애연금제도 등 공공부조제도가 있다. 건강보험제도와 노인 장기요양보험에도 일부 지급하는 현금급여가 있다[6].

공적소득보장제도를 포함한 사회보장제도는 인간의 존엄성 구현과 평등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평등권의 실현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필요에 따른 분배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는데 사회보장제도가 핵심기능을 해야 하는 것이다[7]. 사회보장제도가 국민 최저생활을 위한 소득분배의 기능을 적절히 수행 해야만 평등권이 실현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사회보장제도의 두 기능은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제도이다. 사회보험제도중 대표적인 소득보장제도인 연금은 정액각출에 정액급여 또는 비례각출에 비례급여 방식으로 운영되면 재분배 효과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사용자와 국가가 재정의 일부를

부담하고, 급여제공에 있어서 소득재분배 기전을 급여산식에 포함하고 있어서 재분배의 변화가 일어난다. 건강보험의 경우도 각층은 소득에 비례하지만 급여는 소득과 관계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분배의 효과가 나타난다. 공공부조는 누진적으로 얻어지는 조세를 기반한 국가부담으로 빈곤층에게 일정금액이 지급되는 반면 수급자는 각층 없이 급여를 받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매우 크다.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하여서는 다른 시각차이가 존재한다. 소득재분배를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소득재분배는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하는 사회보장제도는 가치가 없다는 것이며, 그 효과가 크지 않으면 후진적 제도로 본다. 반면에 사회보장의 수단 또는 결과로 소득재분배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사회보장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제도로 소득재분배는 수단 또는 결과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본다[8, 9]. 이처럼 공적소득보장제도가 가진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다른 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치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

## 2) 선행연구 분석

이상에서 논의한 소득보장제도의 경우 종합적인 소득재분배 효과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 개별 제도영역에서 그 효과에 대한 논의들이 일부 이루어졌다. 가장 대표적인 공적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최근 막대하게 적립된 기금의 투자방안과 성과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소득재분배와 소득보장효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10]. 다만 우해봉·한정립(2017)의 연구에서 중장기적으로 다층소득보장구조속에서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중상위 계층 중심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한편 저소득층의 경우 국민연금을 통한 소득보장이 어렵다는 점에서 공적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본다[11]. 즉,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을 담당하는 공적이전제도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신혜원·이준상(2017)은 한국노동패널자료(KLIPS)를 활용하여 개인들의 국민연금 자산(Social Security Wealth)을 추정하고 가계의 저축과 자산구성 방식의 선택에 연금자산이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는 연금자산이 가계 순자산

을 유의하게 구축하는 것을 보이며 소득분위가 높아짐에 따라 구축 정도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2]. 소득이 높은 상위계층에 대한 구축효과가 작다는 것은 은퇴 전의 소득 불균형이 은퇴 후 노후소득 불균형으로 지속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보다 강력히 수행함으로써 사적노후준비를 위한 저축의 대체재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국민연금만은 아니지만 노인들의 노후소득보장제도를 분석한 이용재(2016)는 노인빈곤과 노인의 소득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공적소득, 시장소득, 가족소득 등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 소득원이 소득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적소득 지니계수가 0.4701로 나타나서 불평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소득에서 공적소득을 제외한 소득의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지니계수가 0.4864로 나타나서 공적소득의 노인 소득불평등 증가 효과를 오히려 보이고 있었다[4]. 이용재·엄소영(2015)가 노인의 소득원천을 국가, 시장, 가구, 전체소득으로 분류하여 분담구조를 살펴본 결과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공적소득, 시장소득은 고소득층이 많았다. 반면에 가족소득은 고소득층이 가장 적었다. 저소득층 노인은 가족소득에 의존도가 높아서 빈곤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컸다[5]. 즉, 우리나라 노인은 시장과 가족소득 의존이 서구국가보다 높아서 공적소득보장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공부조와 관련하여서도 전체적인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는 없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초연금과 관련된 개별적인 논의들은 일부 존재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최근 연구보다는 도입초기에 많이 분석되었다. 구인회·임세희·문혜진(2010)의 분석결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구 소득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하였으나, 빈곤율 감소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서 지난 10년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가 저소득층의 소득증가와 소득분배 개선에는 일부 효과가 있었으나, 부분적으로는 빈곤층의 근로동기 약화를 가져왔음을 보여준다고 하였다[13]. 기초연금과 관련하여서 김혜연(2017)은 기초연금이 의한 빈곤감과 소득불평등도 감소효과가 상당히 있었으며 특히 남성노인보다는 여성노인에서 더 크게 나타나서,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노후소득의 성별 격차를 감소시키는데 기초연금이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장치를 보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14].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경우 빈곤감소효과에 일부 기여하고 있는 것이며, 기초연금은 그 영향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사회서비스제도 효과와 관련하여 분석한 노병래(2017)의 연구에서는 불평등 완화를 위한 노동세대에 대한 지출과 사회적 돌봄 서비스 지출이 중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 불평등 역제의 방향을 복지국가 정책을 통한 시장소득 분배 개선과 재분배를 통한 완화로 구분 할 때, 노동 세대에 대한 지출은 주로 재분배를 통한 완화와 관련하여, 돌봄 서비스 지출은 시장소득 분배개선을 통한 완화와 관련하여 주된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다.

한편, 최근 새로운 공적이전제도로 학계에서 거론되고 있는 기본소득의 불평등 완화 효과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현주·장지연·전병유(2017)는 보편주의적 제도인 현금형태 기본소득과 현물형태의 공적서비스의 소득불평등 완화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미 제공되고 있는 현금수당에 보편적인 기본소득의 추가 지급으로 발생하는 불평등 완화 효과와 기존의 현물급여에 추가하여 보편적으로 기초육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의료, 주거, 교육 등과 관련된 지출을 보전할 때의 불평등 완화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유사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 상황하에 얻을 수 있는 불평등의 완화 효과는 현금으로 제공되는 기본소득이나 현물 공적서비스가 거의 비슷하였다[16].

본 연구와 관련하여 일부 유사한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윤종인(2018)의 연구를 보면 1990~2015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가구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소득분배의 실재를 분석하려 하였는데, 처분가능소득을 이용한 지니계수는 2010년까지 조금씩 상승하였으나 이후 안정되어 2000년대 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이는 이전소득 효과를 통해 확인했듯이, 소득재분배정책이 적절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한다[17]. 즉, 공적인 이전소득이 작동하여 가처분 소득의 불평등이 안정화되었다는 논리이다. 또한, 김교성(2017)도 정부의 외환위기 이후 정책적 노력의 성과를 파악한 결과 상대적 빈곤율,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간 차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과거 30년 간 조세체계와 재분배 기제의 빈곤 및 불평등 완화효과가 점차 개선되어 왔다는 의미라고 분석한다[18]. 즉, 다른 나라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나라 공적이전소득의 재분배 효과는 일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제도들의 개별적인 정책효과에 관한 연구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공적이전소득 전반이 소득계층별 불평등에 어떠한 기여를 해 왔는지, 그 규모는 어떠한지에 대한 구체적 결과를 얻지는 못하였다. 아울러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의 도입과 개혁에 따른 시계열적인 분석도 수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경제위기 이후의 공적이전소득의 규모의 변화와 소득계층별 역할변화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활용하는 자료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이다. 1963년부터 수행된 가계동향조사는 전국 2인 이상 도시가계를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2003년부터는 전국가계조사로 확대되었으며, 2006년부터 1인 가구 조사를 시작하였다. 분석을 위해 원 자료는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서 추출하였다.

본 연구는 공적소득보장제도에 의한 공적이전소득의 소득계층별 평균의 차이의 변화와 불평등 정도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의 핵심 개념인 공적이전소득은 공적연금소득, 기초연금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비 등 사회 수혜금, 세금환급금, 각종 공적인 할인혜택을 포함한다. 아울러 소득계층별 공적이전소득의 평균과 불평등, 그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배의 불평등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서 다수 연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집중곡선과 집중지수를 사용하였다. 집중곡선은 로렌즈곡선의 활용과 원리가 동일하며 대상 집단을 사회경제적 상태에 따라 순위를 정한 후 이들 대상 집단의 누적비율을 공적이전소득액의 누적비율에 대해 표시하는 방법이다. 이는 집중지수를 산출하여 연도별 불평등 변화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어 불평등 측정도구로 널리 활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집중지수의 값은 집중곡선과 대각선사이의 면적의 두 배이며, 집중곡선이 대각선 아래에 있을 때는 양(+)의 값을 가지며 대각선 위에 놓일 때는 음(-)의 값을 갖는다. 즉, 집중지수는 -1과 +1사이의 값을 갖는데 전자(-)는 하위 소득계층에 집중된 것이며 후자(+1)는 상위 소득계층에 집중된 경우이다. 구체적인 집중곡선과 집중지수 산출방법은 아래와 같은데, 가로 축은 가구소득 10분위이며, 세로축은 공적이전소득의 누적 비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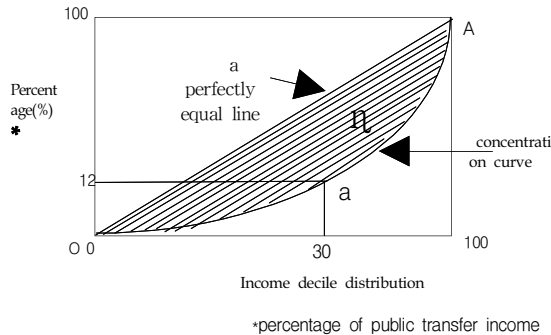


Fig. 1. Concentration curve and Concentration index[19]

#### 4. 연구결과

공적이전소득의 소득계층별 차이와 불평등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IMF경제위기가 발생한 1996년 이후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산출한 집중지수 값의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소득계층별 공적이전소득의 평균액과 전체 평균액 대비 해당 소득계층의 평균 공적이전소득액의 비율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산출한 집중지수와 소득계층별 공적이전소득액은 Table 1과 같다.

우선 소득계층별 집중지수를 살펴보면 1996년의 공적이전소득 집중지수는 +0.2774로 고소득층에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었다. 즉, 고소득층에 공적이전소득이 집중된 것이다. 이러한 고소득층 집중현상은 IMF경제위기 이후인 1998년 +0.2887까지 지속적으로 증가되었으며 경제위기를 극복한 1998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여서 2000년에는 +0.2624로 나타났다. 이후에도 집중지수는 계속 감소하여서 2005년 +0.0059로 크게 감소하여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거의 유사한 공적이전소득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2009년에는 집중지수가 -0.013으로 음의 값이 되면서 저소득층에 공적이전소득이 집중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즉, 2008년 이전까지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던 공적이전소득이 2009년 이후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형태로 변화된 것이다. 비로소 공적이전소득이 전체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의 기전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9년 이후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공적이전소득은 2016년 -0.076을 나타내어 저소득층에 유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집중지수 값이 매우 적어서 저소득층에 집중 정도는 매우 미약하였으며 소득재분배 효과도 크지 않

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요컨대, 한국 공적소득보장제도에 의한 공적이전소득은 고소득층에 집중현상이 점차 감소하여 2009년 이후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현상으로 바뀌어 소득재분배 효과에 기여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 전체 평균 공적이전소득액 대비 해당 소득분위의 평균 공적이전소득액의 비율 변화를 확인하였다. 대표적으로 가장 소득분위가 낮은 저소득층 1분위와 소득분위가 높은 고소득층 10분위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분위의 경우 경제위기에 처한 1996년 0.35로 전체 평균 공적이전소득액의 35%수준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 1.01(101%)로 전체 평균보다 더 많은 공적이전소득액을 나타내었으며 2015년에는 1.15(115%)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에 소득 10분위는 1996년 전체 평균 공적이전소득액 대비 평균의 비율이 2.34(234%)로 전체 평균보다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10분위의 평균 공적이전소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에는 1.01(101%)로 전체 평균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 되었으며 2016년에는 0.85(85%)를 나타내어 전체 평균 공적이전소득 보다 적은 공적이전소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대체로 소득이 낮은 소득분위와 소득이 높은 소득분위로 양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소득 2분위는 1996년 전체 평균 공적이전소득액 대비 평균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0.43(43%)에서 2016년 1.38(138%)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소득 3분위는 0.74(74%)에서 1.21(121%)로 증가하였고, 4분위는 0.65(65%)에서 0.97(97%)로 증가하였다. 5분위도 0.84(84%)에서 0.99(99%)로 증가하였다. 저소득층은 대체로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공적이전소득이 점차 증가하여 평균을 넘어서거나 비슷한 값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소득 6분위는 0.88(88%)에서 0.88(88%)로 변화가 없었으며, 소득 7분위는 0.95(95%)에서 0.94(94%)로 소폭 감소하였다. 소득 8분위는 1.19(119%)에서 0.81(81%)로 감소하였고, 소득 9분위도 1.36(136%)에서 0.86(86%)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고소득층의 공적이전소득은 점차 감소하여 모두 평균값보다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요컨대, 1996년 경제위기 이후 공적이전소득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평균액의 증가폭이 큰 반면에 고소득층은

Table 1. Mean and Inequality of Public Transfer Income by Income Class(1996-2016)

(Unit : persons, won)

Division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 quartile	Mean	4,319	5,364	4,024	6,896	6,896	22,223	27,923	37,133	44,237	47,814	59,612	79,406	102,296	36,944
	Ratio to total average	0.35	0.36	0.36	0.40	0.40	0.76	0.83	1.10	0.91	0.88	0.88	1.01	1.14	1.00
	N	1,029	964	1,030	997	997	634	612	957	1,136	1,245	1,104	1,101	1,088	916
	Standard Deviation	25,889	28,044	18,002	23,393	23,393	54,157	59,351	68,241	72,739	80,519	89,847	99,078	120,786	67,716
2 quartile	Mean	5,269	9,355	3,160	8,741	8,741	26,259	32,116	37,367	51,457	63,863	72,798	88,373	106,297	41,596
	Ratio to total average	0.43	0.63	0.28	0.51	0.51	0.90	0.95	1.11	1.06	1.17	1.08	1.13	1.18	1.13
	N	1,029	965	1,030	998	998	636	612	958	1,137	1,246	1,104	1,101	1,088	916
	Standard Deviation	34,707	54,597	18,756	43,679	43,679	82,923	95,934	93,932	106,663	113,357	118,836	131,493	155,471	99,526
3 quartile	Mean	9,081	6,638	9,313	14,039	14,039	21,099	22,798	26,584	43,366	54,119	56,928	70,763	79,358	34,529
	Ratio to total average	0.74	0.45	0.84	0.82	0.82	0.72	0.68	0.79	0.89	1.00	0.84	0.90	0.88	0.94
	N	1,029	964	1,030	998	998	634	612	957	1,137	1,246	1,104	1,101	1,088	915
	Standard Deviation	57,948	49,150	55,184	69,829	69,829	77,365	84,748	84,093	117,882	127,450	132,943	157,579	164,806	109,330
4 quartile	Mean	7,899	10,771	7,470	9,033	9,033	16,345	27,684	29,452	43,186	54,569	70,545	75,671	83,145	30,295
	Ratio to total average	0.65	0.73	0.67	0.53	0.53	0.56	0.82	0.88	0.89	1.00	1.04	0.97	0.92	0.82
	N	1,029	965	1,030	998	998	635	612	958	1,137	1,246	1,104	1,102	1,088	917
	Standard Deviation	46,793	63,088	52,883	52,287	52,287	65,558	114,224	108,478	137,539	159,996	186,903	193,424	211,576	103,631
5 quartile	Mean	11,840	9,768	6,612	13,896	13,896	22,180	18,063	34,918	49,879	52,302	75,260	72,837	74,664	44,518
	Ratio to total average	0.97	0.66	0.59	0.81	0.81	0.76	0.54	1.04	1.02	0.96	1.11	0.93	0.83	1.21
	N	1,029	965	1,031	997	997	635	613	958	1,136	1,246	1,104	1,101	1,088	916
	Standard Deviation	74,707	68,484	51,474	76,725	76,725	95,372	84,266	138,967	173,290	190,399	236,660	213,176	223,961	171,320
6 quartile	Mean	10,931	14,256	11,031	17,315	17,315	30,737	29,725	34,586	50,886	53,195	59,774	67,351	72,124	40,947
	Ratio to total average	0.90	0.97	0.99	1.01	1.01	1.05	0.88	1.03	1.05	0.98	0.88	0.86	0.80	1.11
	N	1,030	964	1,030	998	998	636	612	957	1,137	1,246	1,104	1,101	1,088	915
	Standard Deviation	70,385	84,139	72,362	88,907	88,907	123,994	119,577	157,980	189,405	195,670	203,639	209,180	229,205	172,197
7 quartile	Mean	12,999	11,365	14,982	20,381	20,381	25,760	33,207	30,959	42,027	52,888	61,764	71,645	88,076	34,469
	Ratio to total average	1.07	0.77	1.35	1.19	1.19	0.88	0.99	0.92	0.86	0.97	0.91	0.92	0.98	0.94
	N	1,029	965	1,030	998	998	635	612	958	1,137	1,246	1,104	1,102	1,088	917
	Standard Deviation	73,482	61,977	89,717	98,407	98,407	110,254	131,548	135,179	169,325	202,173	240,741	267,297	290,299	168,360
8 quartile	Mean	14,503	22,696	15,061	17,883	17,883	28,275	41,451	35,946	50,873	48,942	69,707	86,223	98,764	36,448
	Ratio to total average	1.19	1.54	1.35	1.04	1.04	0.97	1.23	1.07	1.04	0.90	1.03	1.10	1.10	0.99
	N	1,030	964	1,030	998	998	635	612	957	1,137	1,246	1,104	1,101	1,088	915
	Standard Deviation	76,685	103,172	96,042	101,989	101,989	114,066	149,833	163,136	196,826	207,721	260,876	294,229	333,870	166,919
9 quartile	Mean	16,590	26,379	16,444	27,206	27,206	53,223	49,330	27,173	38,664	51,915	59,741	73,074	86,054	30,291
	Ratio to total average	1.36	1.79	1.48	1.58	1.58	1.82	1.47	0.81	0.79	0.95	0.88	0.93	0.96	0.82
	N	1,028	965	1,030	998	998	635	612	958	1,137	1,246	1,104	1,101	1,088	917
	Standard Deviation	79,683	108,007	91,412	131,611	131,611	191,669	195,657	115,228	168,687	223,061	220,292	276,067	315,777	131,637
10 quartile	Mean	28,473	31,097	23,244	36,303	36,303	46,358	54,365	42,465	72,353	64,024	89,708	97,099	108,555	38,344
	Ratio to total average	2.34	2.11	2.09	2.11	2.11	1.59	1.61	1.26	1.49	1.18	1.33	1.24	1.21	1.04
	N	1,029	964	1,030	997	997	634	612	957	1,136	1,245	1,104	1,101	1,088	915
	Standard Deviation	166,677	161,357	142,817	143,897	143,897	180,505	168,665	168,368	269,864	291,204	333,637	345,220	338,729	176,009
Total	Mean	12,190	14,768	11,134	17,169	17,169	29,245	33,664	33,657	48,691	54,363	67,584	78,243	89,933	36,836
	N	10,291	9,645	10,301	9,977	9,977	6,349	6,121	9,575	11,367	12,458	11,040	11,012	10,880	9,159
	Standard Deviation	79,838	86,453	77,929	90,903	90,903	118,350	127,189	127,736	168,711	188,226	214,169	230,723	249,926	141,660
<b>Concentration Index (CI)</b>	<b>0.2774</b>	<b>0.2961</b>	<b>0.2889</b>	<b>0.2624</b>	<b>0.2624</b>	<b>0.1637</b>	<b>0.1426</b>	<b>0.0082</b>	<b>0.0408</b>	<b>0.0059</b>	<b>0.0298</b>	<b>0.0143</b>	<b>0.0027</b>	<b>-0.013</b>	

Table 2. Mean and Inequality of Public Transfer Income by Income Class(continued)

(Unit : persons, won)

Division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 quartile	Mean	106,922	113,325	139,198	152,886	178,507	230,858
	Ratio to total average	1.05	1.04	1.05	1.05	1.08	1.15
	N	1,066	1,072	1,040	1,004	993	971
	Standard Deviation	120,220	119,485	134,525	143,631	155,776	170,675
2 quartile	Mean	131,476	139,597	157,320	185,633	227,205	277,215
	Ratio to total average	1.29	1.29	1.19	1.28	1.37	1.38
	N	1,067	1,072	1,040	1,005	993	971
	Standard Deviation	177,428	179,267	194,672	209,146	220,403	244,292
3 quartile	Mean	104,028	111,648	143,943	154,324	184,234	227,755
	Ratio to total average	1.02	1.03	1.09	1.06	1.11	1.13
	N	1,067	1,072	1,040	1,005	994	970
	Standard Deviation	202,284	211,380	247,499	247,283	274,674	294,756
4 quartile	Mean	78,845	87,344	126,053	141,468	159,392	190,362
	Ratio to total average	0.78	0.80	0.95	0.97	0.96	0.95
	N	1,067	1,072	1,040	1,004	993	971
	Standard Deviation	193,452	210,165	259,785	285,173	299,408	318,261
5 quartile	Mean	85,137	94,287	111,930	125,153	139,926	186,407
	Ratio to total average	0.84	0.87	0.84	0.86	0.85	0.93
	N	1,067	1,072	1,040	1,005	994	971
	Standard Deviation	250,343	255,150	273,845	292,336	318,062	354,152
6 quartile	Mean	89,215	91,364	120,846	122,895	143,091	188,368
	Ratio to total average	0.88	0.84	0.91	0.85	0.87	0.94
	N	1,066	1,073	1,041	1,005	993	972
	Standard Deviation	273,141	287,604	314,972	324,230	367,946	424,033
7 quartile	Mean	96,322	98,320	132,049	135,015	159,240	191,789
	Ratio to total average	0.95	0.91	1.00	0.93	0.96	0.95
	N	1,067	1,072	1,040	1,004	993	971
	Standard Deviation	319,164	316,581	371,476	363,933	410,102	466,669
8 quartile	Mean	94,763	116,864	123,578	152,401	154,858	168,827
	Ratio to total average	0.93	1.08	0.93	1.05	0.94	0.84
	N	1,067	1,072	1,040	1,005	994	971
	Standard Deviation	328,796	381,267	344,238	432,175	428,160	448,422
9 quartile	Mean	114,387	108,593	117,819	137,171	144,279	183,817
	Ratio to total average	1.13	1.00	0.89	0.94	0.87	0.91
	N	1,067	1,072	1,040	1,005	993	971
	Standard Deviation	372,348	366,888	366,912	426,569	430,958	525,359
10 quartile	Mean	115,338	123,886	153,660	147,212	163,165	165,837
	Ratio to total average	1.13	1.14	1.16	1.01	0.99	0.82
	N	1,066	1,072	1,040	1,004	993	970
	Standard Deviation	381,307	405,786	480,633	490,755	552,281	540,428
Total	Mean	101,643	108,521	132,639	145,416	165,388	201,123
	N	10,667	10,721	10,401	10,046	9,933	9,709
	Standard Deviation	275,176	288,028	313,425	337,836	363,542	397,264
Concentration Index (C)	-0.0033	-0.0061	-0.0167	-0.029	-0.0522	-0.0759	-0.0753

적어서 전체 공적이전소득 평균액으로 유사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아울러 1996년 초기에 저소득층의 공적이전소득이 전체 평균 공적이전소득에 비해 턱없이 적어서 소득불평등의 개선에 공적이전제도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던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공적이전소득 금액차이가 크지 않아서 공적이전소득과 관련된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 역할은 여전히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공적이전소득의 소득계층별 평균액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소득층인 1분위는 1996년 4,319원에 불과하던 것이 2016년에는 21만 9,247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고소득층인 10분위는 1996년 2만 8,473원에서 2016년 17만 6,052원으로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공적이전소득의 평균액의 변화는 소득계층과 관계없이 대체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국민연금제도의 성숙에 따른 연금급여의 지급과 기초연금 등과 같은 새로운 소득보장제도가 생기는 등 공적이전소득과 관련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연도별 소득계층별 평균 공적이전소득의 차이를 살펴보면 경제위기 시기인 1996년의 경우 1분위가 4,319원, 10분위가 2만 8,473원으로 차이가 매우 컸다. 그러나 2005년 1분위 공적이전소득이 4만 7,814원, 10분위 6만 4,024원으로 그 차이가 크게 감소하였다. 이후 그 격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13년의 경우 1분위 15만 2,886원, 10분위 14만 7,212원으로 오히려 저소득층인 1분위 평균 공적이전소득금액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공적이전소득이 많은 현상은 2016년까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소득계층에서 공적이전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그 증가속도가 저소득층이 빠르고 고소득층이 느려서 최근에는 저소득층의 공적이전소득이 고소득층에 비해서 높았다.

아래 Fig. 2는 Table 2에서 산출한 1996년부터 2016년까지의 소득계층별 공적이전소득에 대한 집중지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초기 공적이전소득 집중지수는 고소득층에 집중된 양(+)의 값을 보였다. 그러나 공적이전소득의 집중지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9년 이후 저소득층에 공적이전소득이 집중된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서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공적이전이 불평등하게 이루어지다가 2009년 이후 평등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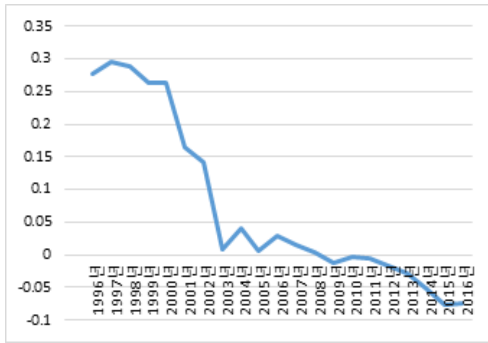


Fig. 2. Changes in the Public Transfer Income Concentration Index by Income Class ('96-'16)

Fig. 3은 소득계층별 공적소득평균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공적이전소득의 평균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각종 공적소득보장제도가 보완되고 급여수준이 개선된 것이 원인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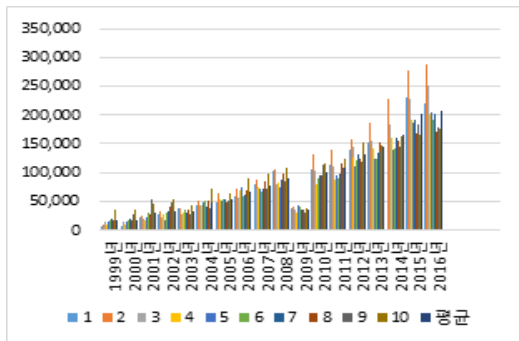


Fig. 3. Changes in Public Transfer Income Average by Income Class('96-'16)(Unit : won)

Fig. 4와 Fig. 5는 소득분위별 전체 평균 공적이전소득 대비 비율을 보여주는 것이다. Fig. 4는 1분위~5분위에 해당하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 저소득층의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저소득층의 평균 공적이전소득의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평균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Fig. 5는 6분위~10분위의 평균 공적이전소득액이 전체 평균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주는데 전체적으로 그 비율이 하향하여 평균값에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저소득계층의 공적이전소득과 고소득계층의 공적이전소득 금액의 차이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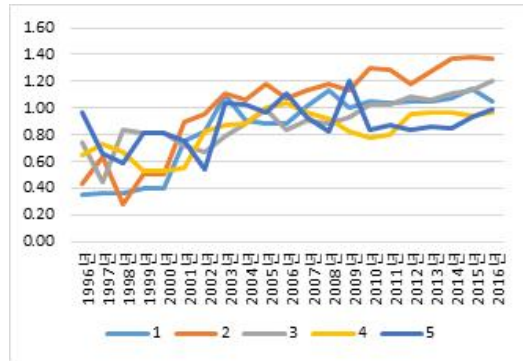


Fig. 4. Change in the ratio of income to the pre-5th quartile relative to the overall average public transfer income('96-'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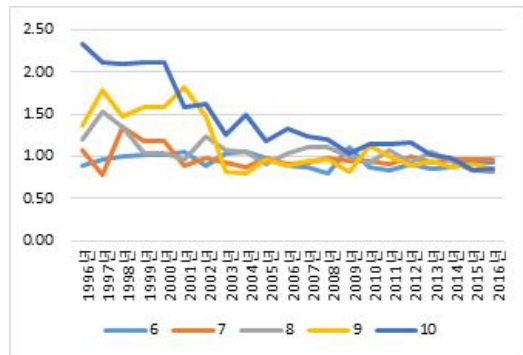


Fig. 5. Change in the ratio of income to the 6-10th quartile relative to the overall average public transfer income('96-'16)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 공적사회보장제도를 통한 공적이전소득의 소득계층별 평균값과 그 변화를 살펴보고, 집중지수 산출을 통하여 소득불평등의 완화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한국 사회보장제도가 소득재분배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해오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소득계층별 집중지수를 살펴보면 경제위기가 발생한 1996년의 공적이전소득 집중지수는 양(+)으로 고소득층에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었다. 즉, 고소득층에 공적이전소득이 집중된 것이다. 이러한 고소득층 집중현상은 IMF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직전인 199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후 감소하여 2005년에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공적이전소득의 수준이 거의 유사하게 되었



다. 결국, 2009년에는 집중지수가 음(-)의 값이 되면서 공적이전소득이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2009년 이후 저소득층의 공적이전소득이 고소득층에 비해 많아서 전체적으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상의 결과는 국민연금에 대하여 분석한 이용재(2016)의 연구결과와 동일하다[4]. 두 번째로 전체 평균 공적이전소득 대비 해당 소득분위의 평균 공적이전소득의 비율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1분위의 공적이전소득은 1996년 전체 평균 공적이전소득의 35%수준에 불과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 101%로 전체 평균보다 더 많았으며, 2015년에는 115%로 나타났다. 공적이전소득 비율의 증가는 소득이 낮은 1-5분위가 모두 같은 경향을 보여서 저소득층의 공적이전소득이 평균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소득수준이 높은 10분위의 평균공적이전소득은 1996년 전체 평균 공적이전소득 대비 234%로 전체 평균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었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에는 101%로 전체 평균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 되었으며 2016년에는 85%수준에 불과하였다. 소득수준이 높은 10분위의 경우 전체 평균보다 적은 공적이전소득을 얻는 것이다. 이러한 공적이전소득의 감소현상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6-10분위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IMF경제위기 이후 공적사회보장제도가 확대, 신설되는 등 내실화 되면서 저소득층의 평균액 증가폭이 큰 반면에 고소득층은 적어서 전체 평균수준으로 유사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는 저소득층의 공적이전소득이 매우 적어서 소득불평등 개선에 기여하지 못하던 것이 차츰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공적이전소득 금액차이가 크지 않아서 소득재분배 역할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이 미약한 수준에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윤종인(2018)과 김교성(2017)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17, 18]. 셋째, 공적이전소득의 소득계층별 평균액의 변화도 이상의 분석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저소득층인 1분위는 1996년 4,319원에 불과하던 것이 2016년에는 21만 9,247원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10분위는 1996년 2만 8,473원에서 2016년 17만 6,052원으로 증가하였지만, 저소득층의 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하여 저소득층의 공적이전소득이 많게 되어 소득재분배 기능을 미약하나마 수행하게 된 것이다. 즉, 모든 소득계층에서 공적이전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그 증가속도가 저소득층이 빠

르고 고소득층이 느려서 최근에는 저소득층의 공적이전소득이 고소득층에 비해서 높았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공적소득보장제도를 통한 공적이전소득은 IMF경제위기 당시 금액이 적을 뿐만 아니라 소득계층별로도 고소득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점차 규모가 증가하면서 소득계층별로 균등하게 배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소득불평등의 심화로 인해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소득재분배 기능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기본소득과 같은 수단제도의 도입과 사회서비스 확대를 통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14, 15]. 특히, 지속적으로 소득대체율을 낮춤으로서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적정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급여산식 개선을 위해서도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1인가구 등 소규모 가구가 증가하고 소득불평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양극화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다[20].

본 연구는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996년부터 2016년까지의 공적소득보장제도에 의한 공적이전소득을 소득계층별로 확인하고, 소득재분배에 미친 영향을 확인한 최초의 연구라는데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분석자료인 가계동향조사는 1963년 시작시점에는 2인 이상 도시가계를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나, 2003년부터 1인 가구도 포함되었다. 즉, 시계열적 조사 데이터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아울러 전체적인 소득보장금액은 확인할 수 있으나 개별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소득금액과 소득재분배 효과를 파악할 수 없어 그 효과를 개별제도별로 구분하여 확인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현존하는 어떤 데이터도 개별 사회보장제도 차원과 종합적인 차원에서 시계열적으로 제도효과를 분석할 수 없는 상황이다[21]. 향후 보다 정확한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소득보장과 소득재분배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별 제도운영기관들이 보유한 데이터를 시계열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정책효과를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1] K. H. Jung. (2011). *Survey on the Living Conditions of the Elderly in 2011*, Health and Social Training Institute.
- [2] R. Reich. (1999). *Social Insurance and Economic Security*, 6th ed. N.J. : Prentice-Hall.
- [3] S. J. Won. (2017). *Social Security*, Yangsewon Press.
- [4] Y. J. Lee. (2016). Impact on Income Inequality of Income Sources in the Elderly, *The Korea Contents Society*, 16(5), 591-600.
- [5] S. Y. Um & Y. J. Lee. (2015). Analysis for Division of State, Market and Family in Income Sources of the Elderly, *The Korea Contents Society*, 15(5), 191-199.
- [6] J. H. Park. (2018). *Social Security*, Community Press.
- [7] J. Rawls. (1971). *A Theory of Social Justice*, Belknap Press.
- [8] Neil Gilbert & Paul Terrell. (2005).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6<sup>th</sup> edition, Publishing as Allyn & Bacon.
- [9] S. D. Park. (2016). *Social Security*, Yangsewon Press.
- [10] M. C. Woo & J. H. Kim (2018). The Influence of the Korean National Pension Fund on Stock Markets. *Asian Review of Financial Research*, 31(2), 221-258.
- [11] H. B. Woo & H. J. Lim. (2017). Future Prospects and Policy Implications of Multi-pillar Old-Age Income Security by Income Level. *Social Security Research*, 33(4), 211-239.
- [12] H. W. Shin & J. S. Lee. (2017). The Effects of Social Security Wealth on Households' Portfolio Choices across Income Groups, *Journal of Korean Economics Studies*, 3(1), 41-74.
- [13] H. I. Ku, S. H. Lim & H. J. Moom. (2010). Impact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on Work, Income, and Poverty,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4(1), 123-148.
- [14] H. Y. Kim. (2017). The Effect of Basic Pension on Gender Poverty and Income Inequality, *Journal of Critical Social Welfare*, 54(1), 120-159.
- [15] B. R. Ro. (2017). A Comparative Study on the Effects of Policy Configurations and Public Expenditures in Welfare Policy Areas on Inequality: Social Security Policies for Working Generations and Social Care as Effective Inequality Mitigation Strategy,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55(1/4), 151-175.
- [16] H. J. Lee, & C. J. Yeun & C. B. You. (2017). A Study on Inequality Reduction Effect of Cash Basic Income and In-kind Public Service, *Journal of Social Science*, 56(1), 93-118.
- [17] J. I. Yoon. (2018). An Essay on the Income Distribution in Korea, *Culture and Convergence*, 40(3), 863-886.
- [18] K. S. Kim. (2017). Development and Limitation of Income Maintenance Policy after the Financial Crisis, *Korea Social Policy Review*, 24(4), 151-184.
- [19] Y. J. Lee. (2018). The Effects of Medical Expenditure on Income Inequality in Elderly and Non-Elderly Households by Income Clas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10), 49-57.
- [20] B. I. Lim, S. T. Kim & J. U. Jung. (2015). A Contribution Analysis of the Increase in 1-2 Person Families on the Income Inequality and the Income Gap.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12), 31-39.
- [21] Y. J. Lee & H. E. Kim. (2017). Impact of the Private Insurance Benefits and the medical Care Expenditure on Household Income Inequali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2), 625-633.

이 용 재(Lee, Yong Jae)

[정회원]



- 2000년 2월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문학사)
- 2002년 8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문학석사)
- 2006년 8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문학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사회보장(의료보장), 사회적경제, 지역복지
- E-Mail : 123peter@hanmail.net

김 용 미(Kim, Yong Mi)

[정회원]



- 2015년 2월 : 고려대학교 인문보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문학석사)
- 2015년 9월 ~ 현재 : 호서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중
- 2016년 11월 ~ 초정노인요양원 원장

- 2017년 9월 ~ 현재 : 충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시간강사
- 관심분야 : 사회보장(노인, 의료) 지역복지
- E-Mail : dasu4501@hanmail.net